

제17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활동정보

조 미 영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I. 서언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는 Codex 위원회(현재 30개 분과위원회(Task Force 포함))의 작업에서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설정하는 정책분과위원회로서 프랑스에서 의장국을 맡아 현재까지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제17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는 2002. 4. 15~19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49개국과 27개 국제기구에서 총 2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농림부 식품국 국장 Mme Catherine GESLAIN-LANEEELLE의 주재아래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로는 Codex에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 국제정부간기구 와의 협력지침, EU의 Codex 회원자격부여 등이였으며 세부 논의내용 및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회의의제는 표 1. 참고)

표 1. 제17차 일반원칙분과위원회 회의의제

의제	의제명	문서번호
의제 1	의제 채택	CX/GP 02/1
의제 2	총회 및 타분과위원회 활동(추적성)에 관한 사항	CX/GP 02/2
의제 3	위해분석 a) 위해분석 작업원칙(초안) - 정부의견 b) CODEX 규격설정시 위해분석적용 - 정부의견 c) 국가에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 개발검토	CX/GP 02/3 CX/GP 02/3-Add.1 CX/GP 02/4 CX/GP 02/4-Add.1 CRD 1
의제 4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초안) - 정부의견	CX/GP 02/5 CX/GP 02/5-Add.1
의제 5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	CX/GP 02/6
의제 6	지역경제통합기구의 CODEX 회원국 자격부여	CX/GP 02/7
의제 7	기타 사업, 향후작업 및 차기 회의장소와 날짜	
의제 8	보고서채택	

II. 의제별 토의내용 및 결과

1. 총회 및 CODEX 타분과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Traceability 포함)(의제 2)

가. 2003-2009년 중기간계획

미국대표는 2003-2009년 중기간 계획에 대하여 회원국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을 강조하자 Codex 사무국은 중기간계획 개정(안)과 회원국의 제출의견을 50차 집행

이사회(2002. 6.)에서 논의할 것임을 알렸다.

나. 추적성

추적성(Traceability)에 관하여 Dr. Randell은 추적성에 관한 49차 집행이사회의 권고사항과 제10차 Codex 식품의 수출입검사및인증제도분과(CCFICS) 및 제3차 생명공학용식품특별정부간작업반(CCFBT) 결과와 우루과이서면의견을 소개하였다. 프랑스대표단은 추적성 정의를 규정하고 작업원칙을 개발하여 이를 위해분석작업원칙으로 포함시켜야 할지 별도 문서로 설정해야 할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EU,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는 동분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적성의 정의를 규명하고 작업반을 만들자는 의견, 노르웨이는 식품안전성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재논의 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리나라로 동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브라질, 멕시코등은 CCFICS의 작업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 미국·호주등은 CCFBT에서 합의한 'Product tracing' 이 위해관리시행 tool로서 우선순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동분과위원회에서 추적성논의필요성, 작업반구성, 작업원칙설정방향, 추적성 논의범위, 추적성용어(traceability, product tracing, traceback)에 대한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향후 사무국에서 문서초안을 작성하고 차기 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다. 식육 및 가금육위생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업무분장

동분과위원회는 식육및가금육위생분과위원회(Committee on Meat and Poultry Hygiene)에서 그 명칭을 "식육위생분과위원회(Committee on Meat Hygiene)"로 개정하고 업무분장도 "식육위생관련 규격 및 실행규범을 설정하는 것"으로 개정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2. CODEX 위해분석작업원칙(초안)(의제 3 (a)¹)

16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01. 4.)에서 위해분석중 사전예방의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24차 총회('01. 6)에 의견요청한 결과 동 문서의

1. Codex에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안)의 본문은 별첨 2 참조

적용범위를 Codex로 한정하기로 하고 사전예방에 관하여 인체건강에 위해가 있으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격설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 적용범위 관련 24차 총회결정 내용

The Commission confirmed its initial mandate to the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 to complete the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within Codex as a high priority, with a view to their adoption in 2003. It also agreed that the Committee should develop guidance to governments subsequently or in parallel, as appropriate in view of its programme of work.

* 사전예방 관련 24차 총회결정내용

When there is evidence that a risk to human health exists but scientific data are insufficient or incomplete, the Commission should not proceed to elaborate a standard but should consider elaborating a related text, such as a code of practice, provided that such a text would be supported by the available scientific evidence.

24차 총회('01. 6')에서 적용범위와 사전예방에 대한 기본입장을 마련한 후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작업반구성을 제안한 바, 12월초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2월초 작업반 회의결과('01. 12. 5.-7.)

작업반 회의시 22개 회원국 및 10개 국제기구에서 총 66명 참석하여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나 사전예방에 관한 총회결정문과 신설조항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주요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i) 위해분석의 적용대상범위를 CODEX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목을 정하고 규정집에 포함시킬 것을 주석으로 담.
- ii) 위해분석의 1차 목표는 건강보호로 하며 동원칙의 적용대상을 CODEX 분과위원회 및 FAO/WHO 전문가조직으로 명확히 함. 또한 위해분석 작업원칙 참고기준을 추가하고 위해분석의 삼단계(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정보전달)간 연계성 강조.

- iii) 위해평가정책(Risk Assessment Policy)에 관한 정의 신설제안
- iv) 위해관리의 접근방식(위해평가(Risk evaluation), 위해관리안평가, 모니터링 및 결정사항검토)을 설정하고 결정사항 시행에 관한 내용은 삭제
- v) 위해정보를 전달해야 할 위해평가자와 위해관리자 및 이해당사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전달의 성격을 명확히 함.

* 사전예방에 관한 논의

“CODEX 규격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위해평가의 가정(assumption)과 위해관리선택(risk management option)시 위험의 특징 및 불확

금번 회의에서는 CODEX 사무국의 지난 16차 회의결과 및 24차 총회결과를 소개하고 프랑스에서 2001. 12 개최한 작업반 회의결과를 Chevassus-au-Louis 교수(작업반 의장)가 소개한 후 조항별 검토에 들어갔다.

제목 및 범위에서 24차 총회결과에 따라 위해분석원칙을 Codex Alimentarius내로 적용도록 확정됨에 따라 제목과 3(2)항을 Codex Alimentarius로 정정하였고 3항과 관련하여 Dr Randell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Codex 규격에 대하여 공정무역관행을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불량방지, 허위나 과장표시방지, 정확한 제품정의등 소비자보호와 직결되지 않은 사항이 총회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호주는 위해분석작업원칙은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 일차목적이므로 공정무역관행은 삭제하자고 하였고 WTO 대표는 SPS협정 5.6조와 TBT협정 2.2조를 인용하며 공정무역이 Codex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영국, 우리나라는 “statement of principle concerning the role of science in the Codex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extent to which other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2항을 제시하며 Codex 의사결정시 소비자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fair practice in food trade”도 고려하도록 되어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벨기에 등의 제안대로 삭제되었다.

위해분석의 특명성을(7항) 확보하자는 내용중 confidentiality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TRIPs협정 제39.3조에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이의제기에 대해 Codex 문서는 모두 공개되며 FAO/WHO 전문가회의문서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Randell의 부연설명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food related risks to human health”(8항)에 대하여 규정집의 risk의 정의에 나와있는 “adverse health effects and the severity of the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 내용을 footnote 하기로 하였다.

사전예방(11항)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영국은 24차 총회 결과를 재검토하자는 의견, 10항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브라질, 아르헨티나), 위해평가가정에는 위해의 성격과 국민건강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미국), 위험의 특징(characteristics of hazard) 등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뉴질랜드) 등을 논의한 후 동문구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였다.

15항을 위해평가정책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위해관리자는 위해평가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위해 관리안으로부터 도출되는 위해감소 가능성(potential risk reduction)을 평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18항)에 대해 뉴질랜드에서 어떤 경우는 위해평가결과 위해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위해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모든 결과를 포괄할 수 있도록 “potential changes in risk”로 제안하였고 WHO 대표는 위해분석의 목표는 위해감소이므로 문장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해평가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제안을 채택하였다.

위해평가의 전문가 선정시 지역적 균형은 이루어야 한다는(21항) 인도의 제안이 반영되어 where possible은 삭제되었고 23항의 정성정보(qualitative information)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결과 24항에 ‘위해평가란 모든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재 문항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위해평가결과 자료에 대한 투명성(23항)에 대해 영국은 위해평가 결과는 “readily and understandable form”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Randell은 JECFA와 JMPR자료는 이해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부연설명후 두 번째 문장 삭제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대표의 제안대로 위해평가시 고려해야할 과학적 자료와 기타 요소를 별도로 고려되도록 23항과 24항을 재조정하였다.

25항에 관하여 인도에서는 위해평가 결과에 개도국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미국은 Codex 규격설정이 자료수집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캐나다와 브라질 인도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개도국의 자료가 없는 경우 ‘FAO/WHO에서 time-bound 연구를 개시할 것을 Codex 위원회에서 요청’ 하는 것으로 정정하기로 하였다.

26항에서 위해평가단계마다 불확실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27항에도 있으므로 26항을 삭제하고 위해추정(risk estimate)자료는 위해관리자, 위해평가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며 불확실성의 영향등을 해소할 책임은 위해관리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여 29항과 30항을 개정하고 Risk estimate 정의를 규정하였다.

유사한 위해에 대한 위해관리(31항)는 위험의 성격(의도적으로 첨가한 성분과 자연발생성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부정당한 차이가 없도록 “different situation”을 삭제(미국)하자고 하였으나 SPS 협정 5.6, 2.2조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WTO 대표등 위해관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공정무역관행증진 포함(31항)과 관련하여 삭제, 유지등 의견이 상충되었으나 브라질체안대로 Codex 두가지 목표는 인정하나 일차목표는 소비자보호를 우선목표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하였다. 인도에서 총회 및 하부분과에서 MRL등 규격이 최종설정되기전 위해평가결과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conclusion of the risk assessment’를 32항에 추가하였다.

위해관리결정은 위해평가를 기초로 해야 하므로(32항) “a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를 삭제하자는 브라질 의견을 수용하였다.

“feasibility of enforcement and compliance”가 위해관리과정(33항)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CI 의견이 수용되었다. Other legitimate factor(36항)에 대하여 이전 문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자는 캐나다 의견, ‘위해관리 및 식품안전에 관한 FAO/WHO전문가협의회’에 관한 주석은 필요없다는 호주의견을 수용하여 해당문장을 삭제하였다.

Codex 규격(안)이 여러 가지이나 소비자보호라는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면 국가에서 채택할 경우 무역제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37항)에 대하여 미국, 스위스는 이 경우 Codex 위원회에서 작업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WTO 대표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에서 적용할 일이나 회원국에게 제시할 권고사항을 개별할 때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후 Codex 사무국은 Codex 규정 설정질차중 5~6단계에서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draft standard for their economic interests”를 검토한다는 부연설명후 결국 캐나다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을 채택하였다.

Codex 규격 및 관련기준 설정시 “flexibility”를 부여해야 한다는 38항에 대해 규격 시행은 Codex 사항이 아니라는 브라질, 멕시코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Codex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동일한 건강보호호수준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호주의견에 따라 “alternative option”으로 대체하였다. 39항에서 위해관리결정에서 특히 개도국의 상황을 고려하는 문안을 추가하였다.

위해정보전달은 전반적으로 문안을 재조정하고 이해당사자(interested parties)에 대하여 주석 4를 인용하기로 하였으며 44항의 위해정보전달의 목표(goal)내용을 상단으로 옮기며 40항중 위해정보전달이란 상호간(reciprocal) 과정임을 확인하고 전문가조

직을 FAO/WHO 전문가모임 및 협의회로 수정하였다.

위해정보전달의 기능과 요구사항을 규정한 41항과 42항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Dr. Randell은 Codex 위원회와 하부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위해정보전달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Codex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의견에 브라질이 동의하여 삭제하였다.

새롭게 제안된 위해평가정책(Risk Assessment Policy), 위해검토(Risk Evaluation), 위해추정(Risk Estimate), 위해프로파일(Risk Profile)에 관한 정의를 채택하였다.

논의결과 당원칙을 5단계로 채택하였고 제50차 집행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최종 확정되면 Codex 위원회와 하부분과위원회 지침용으로 규정집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3. 국가에서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 개발검토(의제 3(c))

Codex 사무국은 24차 총회(2001. 6.)에서 2003년까지 Codex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을 완성하고 동시에 정부에 적용할 관련지침을 개발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을 소개하였고 동분과위원회에서 정부적용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려고 한다면 i) 정부적용을 고려한 초기 작업원칙, ii) FAO/WHO 전문가협의회 권고사항, iii) 식품위생 및 생명공학응용식품에서 논의중인 Codex 분과위원회 권고사항등을 고려할 수 있다 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프랑스 사무국에서 CRD 1으로 제출한 내용을 소개하며 국가에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의 동의아래 Codex 사무국에서 초안을 만들고 프랑스사무국에서 필요한 경우 작업반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4.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초안)(의제 4)

의장은 동규범의 성격에 대하여 WTO에 질의여부 및 동규범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WTO 대표는 Codex는 독립조직으로 권고문설정은 Codex 책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WTO에 질의할 필요가 없으며 규범개정에 보다 전염해야 한다는 미국과 영국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WTO에 질의하지 않기로 하였다.

동규범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원국은 CODEX가 정부간 국제기구이므로 정부에서 적용할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부에서 업자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EU 등은 정부에서 업자에 대

한 법령을 설정할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당국과 commercial operator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였다. 한편 Dr. Randell은 TBT 협정에서 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부연설명을 하였으며 우선 정부에 적용하는 지침을 만들고 이후에 업자에 적용할 지침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조항별 검토를 하려고 하였으나 서언(preamble)만 논의하였고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다.

(b) 항에 대하여 식품품질 뿐만아니라 식품안전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c) 항에 대하여 스페인대표는 식품안전성 확보권리는 모든 소비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소득소비자로 제한하는 내용은 필요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칠레 대표는 동일한 사유로 저소득소비자문구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현문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d) 항에 대하여 Randell 제안대로 현재 문장을 유지하되 효과적인 식품관리제도가 현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f) 항에 대하여 회원국은 WTO 협정하에 의무과 권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certain”을 권리와 의무앞에 추가하였다. (g) 항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대표는 모유대체식품의 판매에 관한 국제규범등 특정식품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WHO 대표 등 다수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와 ‘World Health Resolution’ 유지에 대한 지지를 보내어 현문장을 유지하였다.

(h) 항에 대하여 볼리비아대표는 기아와 영양불량상태, 식량부족등 여러 요소가 무역의 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식품의 공정무역에 대해서만 논의하지 말아야 하며 제목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영국대표는 식품교역에 수행되는 정황들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논의결과 Codex 사무국에서 재기안하여 차기회의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으로 3단계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5. 국제정부간기구와의 협력지침(의제 5)

Codex 사무국은 24차 총회결정에 따라 Codex와 타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작업을 개시하게 되었고 이 내용은 Codex 규정집 정관 제1조 b) 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Codex 일반설정절차” 개정(안)을 제시함을 설명하였다.

한편 정부간기구와 비정부간기구사이에 정관상 차이가 없다는 점과 FAO 및 WHO의 해당규정상 총회와 타국제기구가 다루어져있기 때문에 타국제정부간기구와 공식적인 협의를 할 수 없었음을 알렸고 Codex 사무국에서 제안한 협력방안은 세가지다.

- ① 타국제기구에 일부 또는 전과정의 규격설정을 위임하되 5/8단계 결정은 Codex에서 하며 사례별로 적용(cf. CCMMMP, CCFFV)
- ② CODEX 규격설정절차를 따르되 타국제기구와 공동규격개발(cf. joint ECE/Codex Alimentarius Groups of Experts on Standardization)
- ③ 타국제기구에서 개발한 규격을 Codex 위원회에서 채택(cf. CCMAS)

말레이시아 대표는 Codex 규격설정시 타국제기구와 협력이란 타국제기구에서 설정한 규격을 Codex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작업참여어려움, 작업의 투명성, 포괄성, 공개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CRD 6)하며 강력하게 반대입장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 standardization 국제기구와의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써는 Codex 규정집 “일반설정절차(uniform elaboration procedures)”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하였다.

인도의 경우 개도국의 참여부담과 국가적 작업증가등의 우려표명, 캐나다는 타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초안은 3단계이상으로 설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 칠레대표는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을 해야 하는 국제기구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OIE 같은 단독기구는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모로코, 일본 등은 국제기구와의 조화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스페인대표는 Joint UNECE/Codex 전문가그룹처럼 다른 기구에서 설정한 규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소비자연합, CI는 Codex는 공개성, 투명성, 소비자와 공중이해포함의 원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OIE 대표는 두기관의 관련 분야를 확인하고 공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공식적 협의내용을 알리며 OIE는 FAO 및 WHO와의 이전합의를 개정하기 위한 공식협의에 들어갔음을 알렸으며 OIV(Office International de la Vigne et du Vin)는 최근 회원자격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Codex와 협력절차를 개선했으며 향후 공동 이해에 대한 협력의사를 표명하였다.

대부분 Codex 정관 1.b), 1.c) 및 24차 총회에서 승인한 2003-2007년 중기간 계획에 따라 협력강화는 지지하였고 어떤 대표단은 CCMAS에서 IUPAC, ISO, AOAC와의 특별약정이 있으며 CCMMMP의 경우도 IDF와의 작업관계에 대한 참고문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논의결과 동분과위원회는 일반설정절차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가운데 Codex 사무국에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국제정부간기구(IGO)와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모델을 더욱 정확히 규정한 지침(안)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지역경제통합기구의 CODEX 회원자격부여(의제 6)

2001. 2. 28. EU 협의회(council)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FAO/WHO 사무총장에게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회원국 자격'에 관하여 논의하자는 요청에 의해 논의하게 된 것으로 금번회의에서는 FAO 법률자문가(Legal Counsel)가 EC의 FAO 회원 자격과 권리에 대한 소개이후 회원국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FAO 법률자문가는 동 논의는 16차 회의(2001. 4.)에서와 2001 총회(2001. 6.)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사안으로 1991년 FAO 규정(Constitution) 개정이후 EC는 FAO 회원국으로 투표권이 있으며 EC가 회원국을 대표하든지 아니면 회원국이 하든지 탄력적인 운영을 해왔음을 알렸다. 또한 1991년 이후 Codex 회의에 EC는 참관인으로 참석해 왔었다고 언급하였으며 향후 동분과회의 결과를 FAO 법률협의분과(FAO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nd Legal Matters)에 제출할 것이며 그 이후 FAO 사무총장(Director-General)에게 권고되며 그 결과 동분과는 FAO의 EC 회원자격에 관한 모든 사항을 따라야함을 소개하였다.

투표권에 대해 칠레, 호주는 투표권에 대해 EC가 회의에 참석한 국가를 대표하는지 아니면 등록했으나 참석하지 않은 국가도 대표하는지 질의하였는데 영국은 일단 투표권이 위임되면 회원국의 참석여부는 관련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인도의 경우 FAO 적용은 특별한 적용이며 UN의 다른 하부조직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체코도 타지역경제통합기구가 Codex 작업에 참여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호주대표는 회원국의 권리란 투표권 뿐만아니라 Consensus 여부 결정 시에도 반영되므로 의사결정시 중요한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FAO 법률자문가는 FAO 내에서 EC의 모든 회원국이 회의장에 실제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즉 EC의 한번의 투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등록한 회원국을 대표한다는 의미라는 답변을 하였다. 동분과위원회는 규정 II. 3에 대해 투표당시 참석한 회원국을 대표한다는 내용으로 정정('and present at the time the vote is taken)하여 FAO 위원회에 의견요청하기로 하였다.

정족수에 대하여 호주에서 정족수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FAO 법률자문가는 정족수는 투표권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정족수구성회원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이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Randell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 선출이나 임원으로 지명될 수 없으며 회의주최국이나 지역조정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은 EU의 집행이사회에 참여에 대하여 질의하자 Codex 사무국은 집행이사회와

선출된 7명의 회원은 지역대표로 간주될 지라도 개인회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하진 않았음을 설명하였다.

Codex 하부조직에서의 회원국 권리행사에 대하여 FAO 법률자문가는 동일한 참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통상 합의에 의한 결정이므로 투표권행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Codex 사무국은 작업반과 기안그룹참여는 비공식적이므로 회원국 행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WHO나 UN기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FAO 법률자문가는 EC의 FAO의 회원국부여규정은 충분히 UN 법률자문가와 토의가 된 사항이며 FAO/WHO 합동조직의 회원국자격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WHO나 UN 기관과 법적 관계가 없음에 합의하였음을 알렸다. EC 대표는 Codex 참여는 FAO나 기타 다른 조직과도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언급하였다.

대부분 국가들이 상기한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 EC 회원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였으나 블리비아대표는 EC의 Codex 회원국자격부여가 타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고 인도대표의 경우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인지 이의를 제기하며 이러한 혜택이 EC 그룹의 회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미국대표도 EC의 Codex 작업의 기여도는 인정하나 성격이 복잡하여 회원국을 대표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 회원국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다는 문제를 이야기 하며 EC가 회원인 국제기구가 있으나 EC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투표(only one vote)라고 지적하며 향후 EC가 확대된 경우 block voting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논의결과 동분과위원회는 규정개정은 시기상조이며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EC는 식품위생분과위원회에서 EC 참여모델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7. 기타사업 및 향후일정

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대한 FAO/WHO 평가

FAO 대표는 FAO와WHO에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등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에 대하여 독립평가를 요청했음을 알렸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작업은 FAO 프로그램분과(programme committee) 및 WHO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업무분장도 FAO/WHO 평가팀(evaluation unit)에서 규정한 바 있고 이 업무분장은 87차 FAO 프로그램분과에서 검토되었고 평가종료시한은 2003년으로 독립평가팀 및 전문가패널에서 수행할 것으로 권고문이

작성되면 FAO/WHO 이사회(Governing Body)와 집행이사회 및 Codex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미국대표는 평가작업은 관리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업무분장이 집행이사회에서 초기 논의된 업무이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WHO 대표는 FAO/WHO에서 합의된 업무분장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Codex 뿐만아니라 FAO/WHO 전문가조직에 의해 제공된 과학적 자문등 FAO/WHO 식품규격프로그램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차기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2003. 4. 7~11 개최하기로 하였다.

※ 금번 회의의 작업상황은 표 2 참조.

표 2. 제17차 Codex 일반원칙분과위원회 작업상황 요약표

의제 내용	단계	집행기구	참고 (ALINORM 03/33)
규정집의 개정(안) 및 CCMPH 제목과 업무분장		정부 25차 총회	para. 14
Codex 적용위한 위해분석 작업원칙(초안)	5	CCESEC 정부 25차 총회	para. 63 별첨 II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 범(초안)	2/3	사무국 정부 18차 CCGP	para. 91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회원국 자격부여		FAO(CCLM) 18차 CCGP	para. 120
Codex 규격 및 관련기준설정시 국제기구와의 협력지침		사무국 18차 CCGP	para. 104
정부적용위한 위해분석작업 원칙(초안)	1/2/3	CCESEC 사무국/정부 18차 CCGP	para. 72
추적성/Product tracing에 관한 사항		사무국 18차 CCGP	para. 12

III. 결언

금번 회의에서는 위해분석작업원칙을 5단계로 합의한 결과가 큰 성과로 판단되며 이외 EU의 Codex 회원국자격획득, 식품의 국제간 교역시 윤리규범, 국제정부간기구 와의 협력지침등 의제를 논의할 때 회원국간 국가간 이익이 대립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ODEX 협의가 식품의 실질적인 통상 해결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CODEX 논의에 대한 follow-up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사전대응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 협의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국가에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Working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to be Applied by Government)” 작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보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별첨 1

CODEX에 적용할 위해분석작업원칙(초안)

(Proposed Draft Working Principles for Risk Analysis for Application in the Framework of
the Codex Alimentarius²)
(5단계)

범위

- 1) 위해분석작업원칙(principles for risk analysis)은 CODEX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 2) 작업원칙의 목표는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FAO/WHO 합동전문가모임 및 협의회(Joint FAO/WHO expert bodies and consultations)에 지침을 주어 식품안전 및 보건에 관한 Codex 규격 및 관련 기준이 위해분석을 토대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3)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구조 및 그 절차상 위해관리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할 책임은 Codex 위원회(Commission: 이하 “Codex 위원회라 한다) 및 그 하부 분과위원회(위해관리자)에게 있으며, 반면 위해평가의 책임은 통상 FAO/WHO 전문가모임 및 협의회(Joint FAO/WHO expert bodies and consultation)(위해평가자)에 있다.

위해분석(Risk Analysis) - 일반사항(General Aspects)

- 4) Codex에 사용할 위해분석과정은
 -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문서화되어야 하고

2. 동원칙은 Codex 규정집에 실릴 것이며 동원칙은 정부적용을 위한 위해분석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개별 Codex 지침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과학의 역할 및 고려해야 할 기타요소 범위에 관한 원칙(Statement of Principle Concerning the Role of Science and the Extent to Which Other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및 식품안전성 위해평가 역할에 관한 원칙(Statement of Principle Relating to the Role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과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한다.

- 5) 위해분석과정은 세가지 과정으로 뚜렷이 구별된 접근방법이나 Codex³에서 규정한 위해분석(위해평가, 위해관리 및 위해정보전달)은 위해분석 전과정에서 절대필요한 개별 요소로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 6) 위해분석의 세가지 구성요소는 완전히(fully) 체계적으로(systemically) 투명한 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기밀(confidentiality)⁴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모든 이해당사자⁵가 문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7) 위해분석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효과적인 정보전달 및 협의(Consultation)가 있어야 한다.
- 8) 위해분석의 세가지 구성요소는 인체건강에 식품위해⁶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구조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 9)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는 기능상 분리되는 작업이 되도록 하여 위해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위해평가자와 위해관리자간 역할 혼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해분석이란 반복적인 과정으로서 실제 적용시점에서 위해관리자와 위해평가자간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 10) 인체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증거가 있으나 과학적인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규격을 설정하지 않아야 하며 단, 이 용가능한 과학적인 근거⁷가 있다면 실행규범과 같은 관련 기준의 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Codex 규정집중 식품안전관련 위해분석용어정의 참고.

4. 정의는 부록 용어에 추가되어야 한다.

5. 이해당사자란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업체, 학계 및 적절히 관련당사자(relevant parties) 및 해당 대표기구(representative organizations)를 말한다.

6. Codex 규정집의 정의 반영(위해 : A function of probability of an adverse health effect and severity of that effect, consequential to a hazard(s) in food")

7. 24차 총회에서 채택된 문안

- 11) 사전예방(Precaution)이란 위해분석의 고유요소(inherent element)이다. 식품과 관련하여 인체건강의 위험요소에 관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과정에서 불확실성 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현존 과학적인 정보중 불확실성(uncertainty)과 변이성(variability)의 정도는 명백히 위해분석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Codex에서 규격이나 관련기준을 설정할 만큼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위해평가에 사용되는 가정(the assumption used for the risk assessment)과 위해관리안 선정(the risk management options selected)시 불확실성의 정도와 위험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 12)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상황은 특별히 확인되어야 하며 위해분석과정의 각 단계마다 담당조직(responsible bodies)에서 고려해야 한다.

위해평가정책(Risk Assessment Policy)

- 13) 위해평가정책결정은 위해관리시 특정 구성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 14) 위해평가정책이란 위해평가에 앞서 위해관리자에 의해 설정되어야 하며 위해평가자 및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위해평가과정이 체계적이며 완결되고 공평하며(unbiased),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15) 위해관리자가 위해평가자에게 제시한 요구사항(mandate)은 가능한 한 명확하여야 한다.
- 16) 필요한 경우, 위해관리자는 위해평가자에게 여러 가지 위해관리방안(risk management option)을 통해 초래되는 위해의 가능한 변화를 평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위해평가(Risk Assessment)⁸

- 17) 위해평가의 범위와 목적은 명백히 기술되어야 한다. 위해평가의 결과양식과 가능한 다른 대안(alternative output)은 규정되어야 한다.
- 18) 위해평가 담당 전문가는 전문성과 이해관계에 있어 독립성을 토대로 투명한 방식을 통해 선정되어야 한다. 전문가 선정절차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의 공개발표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발표문안은 개별 전문성

8. 식품안전성 위해평가역할에 관한 원칙(Statements of Principle Relating to the Role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 참고

과 경험을 확인하고 상술해야 한다. 전문가모임(expert bodies) 및 협의회(consultation)는 개도국의 전문가등 세계다양한 지역의 전문가의 효율적인 참여를 확보하여야 한다.

- 19) 위해평가는 “식품안전성 위해평가역할에 관한 원칙(Statements of Principles Relating to the Role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위해평가과정 즉, 위험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특성분석(hazard characterization),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및 위해특성분석(risk characterization)등의 네가지 과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 20) 위해평가는 모든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자료를 기초로 수행한다. 위해평가는 최대한 이용가능한 정량정보(quantitative information)를 사용한다. 또한 위해평가는 정성정보(qualitative information)도 고려할 수 있다.
- 21) 위해평가는 전통관행, 분석방법, 시료채취, 건강상 역효과(adverse effect)의 파급등 식품(food chain)에 있어 사용된 관련 생산, 저장 및 취급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 22) 위해평가를 할 때 전세계 다른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통합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역학감시자료 및 노출자료를 포함한다. 관련 자료가 개도국에 없는 경우 Codex 위원회는 FAO/WHO에게 일정기간동안 개도국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를 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23) 제한(conflict), 불확실성(uncertainty), 가정(assumption)은 위해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위해평가과정 각 단계마다 명백히 검토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위해추정(risk estimate)에서 불확실성이나 변이성 표현은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될 수 있으나 과학적으로 도달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량화되어야 한다.
- 24) 위해평가는 위해평가정책에서 규정된 다른 상황을 고려하면서 실제노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해평가에는 취약그룹과 위해가 높은 집단도 고려되어야 한다. 급성, 만성(장기간도 포함), 반복(cumulative) 및/또는 복합적인 건강의 역효과도 관련되는 경우 위해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 25) 위해평가보고서에는 모든 제한요소, 불확실성, 가정 및 위해평가시 그들의 영향 및 소수의견도 제시되어야 한다. 위해관리 결정시 불확실성의 영향을 해결할 책임은 위해평가자가 아니라 위해관리자에게 있다.
- 26) 위해평가결론은 가능하다면 위해추정을 포함하며 위해관리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서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른 위해평가자나 이해당사자에게도 이용가능하도록 하여 평가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위해관리 (Risk Management)

- 27)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교역시 공정관행을 확보한다는 Codex 두가지 목적을 인정하지만 위해관리시 Codex의 결정과 권고문은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일차 목표로 한다. 다른 상황에서 유사한 위해를 다룰 때 소비자건강보호수준의 부정당한 차별은 피하여야 한다.
- 28) 위해관리는 위해검토(Risk evaluation), 위해관리대안 평가, 결정검토등 조직적인 접근방식을 따라야 한다. 그 결정은 위해평가를 토대로 하며 “2항 원칙 관련 기타요소검토기준(Criteria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Other Factors Referred to in the Second Statement of Principles)”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식품교역시 공정관행촉진 관련 기타 합법적인 요소(legitimate factor)를 고려하여야 한다.
- 29)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하부분과위원회는 동작업원칙내에서 위해관리자로서 최대허용기준이나 규격설정에 있어 10항에 제시된 지침을 상기하면서 위해관리대안에 대한 최종제안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해평가결론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 30) 위해관리가 합의된 결과가 되기 위해서 관련 생산, 저장 및 전통관행, 분석방법, 시료채취 및 검사, 승인 및 적합 가능성(feasibility) 및 특정 역효과의 전파 등 식품연쇄에 사용된 취급관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1) 위해관리과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일관되고 충분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위해관리에 관한 Codex 결정과 권고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위해관리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 Codex 규격 및 관련기준은 적절히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 32) 위해관리대안은 위해분석의 위해분석의 범위와 목적 및 도달해야 할 소비자건강보호수준에 의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무조치에 대한 대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33) 위해관리대안의 평가는 위해의 관리를 위한 결정이 되도록 위해검토과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9. 동기준은 24차 총회에서 채택

- 34) 부정당한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해관리는 어떤 경우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해관리대안의 모든 검토는 가능한 한 잠재적인 손익손실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른 위해관리대안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그 대안이 소비자건강보호라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면 Codex 위원회는 회원국간 교역시 동조치를 통한 잠재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35) 위해관리는 경제적 결과 및 위해관리대안(risk management option)의 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해관리는 규격, 지침서 및 다른 권고사항의 설정시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일관된 다른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36) 위해관리과정에는 위해관리결정의 평가와 검토과정에서 새롭게 발생된 모든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식품규격 및 관련기준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 및 위해분석 관련한 기타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갱신되어야 한다.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

- 37) 위해정보전달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위해분석과정중 검토대상에 관한 인식과 이해를 도모한다.
 - 위해관리대안/검토사항을 공식화함에 있어 일관성 및 투명성을 촉진한다.
 - 제안된 위해관리결정의 이해를 도모함에 있어 전전한 기초를 제공한다.
 - 위해분석과정중 전반적인 유효성(effectiveness) 및 효율성(efficacy)를 증진시킨다.
 - 참석자간 작업관계를 강화한다.
 - 식품공급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도모한다.
 - 적절히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식품관련 위해에 관한 이해당사자간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 38) 위해분석이란 위해평가자(joint FAO/WHO expert bodies and consultations) 및 위해관리자(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하부분과)간 명확하고 반복되며 문서화된 전달과정이 되고 전과정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와 회원국간의 상호정보전달과정이 되어야 한다.
- 39) 위해정보전달은 정보전달 이상이여야 한다. 위해정보전달의 주요 기능은 효과

적인 위해관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모든 이해당사자간 진행중인 상호정보전달은 위해분석과정중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 40) 위해정보전달에서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이 모든 이해당사자간 교환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 41) 이해당사자4가 관여된 위해정보전달이란 불확실성등 위해평가정책 및 위해평가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규격 또는 관련 기준의 필요성 및 불확실성이 다루어지는 방법 등 해당결정에 따른 수반절차는 명백히 설명되어야 한다. 모든 제한(conflict), 불확실성, 가정 및 위해분석과정시 그들의 영향 및 소수의견도 제시되어야 한다.
- 42) 동문서의 위해정보전달지침은 Codex 내에 위해분석과정을 수행할 때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작업이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대상이나 다른 이해당사자4에게도 가능한 한 투명하고 이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부 록 1>

정의

규정집에 포함된 정의

위험(Hazard)이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식품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

위해(Risk)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확률 및 식품중의 위험에서 기인된 영향의 심각성(severity)에 대한 함수

위해분석(Risk Analysis)이란 세 가지 부분(위해평가, 위해관리, 위해정보전달)으로 이루어진 과정

위해평가(Risk Assessment)란 다음 단계로 구성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 : 즉
(i) 위험의 확인(hazard identification), (ii) 위험의 특성분석(hazard characterization),
(iii)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iv) 위해특성분석(risk characterization)

위험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란 특정 식품 또는 식품군에 존재하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인자의 확인

위험특성분석(Hazard Characterization)이란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성격에 대한 정량적 및/또는 정성 평가. 화학적 인자의 경우에 투여-반응평가(dose response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물학적 또는 물리학적 인자의 경우, 자료 입수가 가능하다면 투여-반응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여-반응평가(Dose-Response Assessment)란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에 노출(투여) 정도(magnitude)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반응)의 빈도 및/또는 심각성(severity)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란 해당 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식품을 통해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인자의 섭취정도에 대한 정량적 및/또는 정성 평가

위해특성분석(Risk Characterization)이란 대상 집단에 대한 위험확인, 위험의 특성분석 및 노출평가를 근거로 알려지거나 잠재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발생과 심각성(severity)에 대한 확률과 불확실성(uncertainties)에 대한 정성 및/또는 정량 평가.

위해관리(Risk Management)란 소비자의 건강보호 및 공정한 무역관행증진을 위해 위해평가와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예방관리방안(prevention and control options)을 선택하면서, 위해평가와는 별도로 모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하에 정책대안(policy alternative)을 검토하는 과정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란 위해평가자, 위해관리자, 소비자, 업체, 학계 및 기타 이해당사자간에 위해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위해관리결정의 근거 등과 위험 및 위해, 위해관련요소 및 위해인지(risk perception)에 관해 전반적인 위해분석과정동안 관련 정보와 여러 방안을 상호 교환하는 것

기타 정의

위해평가정책(Risk Assessment Policy)이란 해당과정이 과학적인 과정(scientific integrity)이 되도록 정책선정(policy choices)과 관련 판단(judgement) 및 위해평가시 결정시점에서의 정책 및 판단의 적용을 위해 작성된 지침을 말한다.

위해검토(Risk Evaluation)이란

- 식품안전문제확인
- 위해프로파일(risk profile) 설정
-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우선순위를 위한 위험의 서열
- 위해평가수행을 위한 위해평가정책 설정
- 위해평가 위임(commissioning)
- 위해평가결과검토

위해 프로파일(Risk profile)이란 식품안전문제 및 그 관계의 기술

위해추정(Risk estimate)이란 위해특성분석에 따른 위해의 정량 추정치